KMA 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(우)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(이촌동) [http://www.kma.org] / 전화(02)6350-6578 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장 백영기(6574) / 보험정책팀장 박우민(6581) / 보험정책팀 대리 강지윤(6578) / 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21-06760호

시행일자 2025. 9. 18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「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」 자율점검 운영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-306 (2025. 9. 17.)

3.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「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」 자율점검 운영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온 바,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○ **(대상기간)** 2022. 1. ~ 2024. 12.
① 대상기간 내, 청구 금액 상위 6개월 진료분 우선 점검
② 우선 점검 결과 착오 청구 확인 시, 대상기간 범위 내 점검 실시

○ **(점검사항)**
-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관련 마취료 산정지침 등에 맞게 청구하였는지 점검
- 요양(의료)급여비용 청구 내역과 실시 여부 및 횟수가 동일한지 점검

○ **(방법 및 절차)** 심평원이 통보한 내역을 바탕으로 요양기관 스스로 청구내역을 점검하고 실제 진료행위 등에 대하여 자율점검 결과서 및 점검결과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통보서 수령 30일 이내에 제출

- 자율점검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은 반납하되 행정처분을 면제함
- 단, 자율점검결과서 미제출 또는 위·변조 자료 등 허위사실 제출 시 현지조사 의뢰대상이 될 수 있음

붙임자료 1.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문 1부.
2.「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」자율점검 안내문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

* 수신처 : 각 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개원의협의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